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50261 판결 [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9311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50261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철우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방문판매업, 바이오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2009. 9. 23. 피고 회사를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 목적으로 설립한 후 2016. 6. 29. 피고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2016. 7. 12. 방문판매전문 다단계영업조직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E 그룹’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E 그룹의 각종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직원 채용·인사, 주식 발행 및 판매 영업, 사업 홍보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한 자이고, F은 2016. 1.경부터 E 그룹에 참여하여 상무이사, 전무이사, 수석전무이사, 부사장, 수석부사장, 부대표, 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2017. 9. 15. 공동대표로 승진한 후 천안·충남지역 E 총판 사업자 관리 및 주식판매 등을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C는 강연, G, 언론기사 등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조원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H 그룹과 1,000만 달러 제품 수출계약 체결, 홍콩업체와 1,500만 달러 제품 수출계약 체결, I 면세점 입점, J 및 K 독점 공급, 스리랑카 LED 전구 1,000만개 납품 및 LED 가로등 46만개 교체사업 수주, 국방부 납품 확정, 화상 치료제 개발’ 등 피고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상 성과가 실현되고 피고 회사의 제품도 매우 우수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2016. 2.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고 회사 주식대금 명목으로 892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F을 통해 피고 C의 허위 홍보 및 설명을 듣고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C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C, F 등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피고 회사 주식을 사면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되어 주가가 수십만원, 수백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추후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환불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단계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4차례에 걸쳐 합계 110,5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C로부터 합계 32,500주에 관한 주식확인증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회사는 2017. 11. 21.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32,500주의 통일주권을 입고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9. 2. 초순경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광고나 피고 C의 강연, G 등의 홍보 등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임을 의심하면서 F를 통해 피고 C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고 C의 주식계좌로 보유주식을 입고시키면 환불해주겠다는 피고 회사의 직원의 안내로 2019. 2. 12. 피고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32,500주를 출고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 110,5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C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2.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고 회사 주식대금 명목으로 892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고합63, 2019고합105(병합),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임]. F도 피고 C와 동일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F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02. 5.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를 비롯한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인 피고 C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원고는 F와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F의 거래행위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피해액은 피고 C의 형사판결상의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 F을 통해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식은 피고 C 소유의 주식인 사실,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110,500,000원이고, 그 중 F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피고 C에게 지급된 사실,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수천명에 이름)의 피해자들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매수는 피고 C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C는 그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원고는 2016. 7. 12. 피고 회사로부터 2,9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일자 및 피해금액이 피고 C의 형사판결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점, 이는 원고가 F을 통해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까닭에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C가 발행한 피고 회사 주식 32,500주에 관한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로부터 32,500주의

주권을 발급받았고, 1주당 가격은 최소 2,700원에서 최고 11,000원 사이의 금액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위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해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